

※ 특별공급 신청시 유의사항

- 재당첨제한, 주택소유등 부적격자는 추천기관에서의 선정통보와 무관하게 계약이 불가함
- 당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가 개별 공고되므로 해당 주택형별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람.
- 본 안내문은 '하남포웰시티'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특별공급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자료로 인허가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람.
-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,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
1. 공급개요 및 일정

- 위치 :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지구 내 B6블록
- 공급규모 : 아파트 9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- 분양문의 : 하남포웰시티 견본주택 Tel. 1577-5811

| 구분 | 일정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주자모집공고 | 2018. 04. 26(목) 예정 | 힐스테이트 홈페이지 |
| 견본주택 오픈 | 2018. 04. 27(금) 예정 |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2-9 |
| 특별공급접수 | 2018. 05. 02(수) 예정 | 견본주택 현장접수 10:00 ~ 14:00 |
| 당첨자 발표 | 2018. 05. 02(수) 예정 | 18:00 이후 (현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) |
| 동·호수발표 | 2018. 05. 11(금) 예정 | 17:00 예정 (현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) |
| 계약체결 | 2018. 05. 23(수) ~ 05. 29(화) 예정 | 견본주택 10:00~16:00 (5일간, 주말 제외) |

※ 상기 일정은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필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람.

2. 해당기관 특별공급 세대수

| 특별공급 | 지역 | 주택형 | |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|
| | | 73㎡ | 84㎡ | 합계 |
| 장애인 | 서울특별시 | 3 | 3 | 6 |

※ 상기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공급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 ※ 하남 포웰시티는 우선 공급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 공급함.

| 기준일 | 지역 우선공급 비율 | | | 지역 우선공급 거주요건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하남시 | 경기도 | 수도권 | 하남시 | 경기도 | 수도권 |
| 입주자모집 공고일 | 30% | 20% | 50% |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|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|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 거주자 |

3. 신청자격
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'무주택세대 구성원'으로서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제36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함.

| 구분 |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|
|----------|---|
| 공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투기과열지구,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(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)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8. 04. 26)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함 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(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※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이주대책자 제외 |
| 자격요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기복무제대군인,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, 장애인,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대상자등에 해당하는 자 중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 (추천서)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함 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수 배정) 및 계약 불가] |
| 공급대상 제외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'무주택세대구성원'이 아닌 자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 신청 서류,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불일치하는 경우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 하는 경우 (ex:본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& 배우자 다자녀특별공급 중복 신청, 모두 부적격) |

4. 구비서류

| 필요서류 | | 내용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|
| 본인 | 필수 | 특별공급신청서 | 견본주택 비치 |
| | | 무주택서약서 | 견본주택 비치 |
| | | 신분증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|
| |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| 용도 : 특별공급 신청용 |
| | | 주민등록표등본 |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|
| | | 주민등록표초본 |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등본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|
| | | 가족관계증명서 |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상세 발급 |
| | |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|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제외 |
| | 해당자 | 기관장 추천서 | 해당기관에서 추천자를 별도 통보할 경우 불필요 |
| 대리인 추가서류 | 위임장 | 청약자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 (견본주택 내 양식 비치) | |
| |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| 특별공급신청 위임용 | |
| | 대리인 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등, 재외동포: 국내거소 신고증,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 | |
| | 대리인 인장 | - | |

※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18.04.26)이후 발행분만 해당됨.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은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.

※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, 더 정확한 내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.

5.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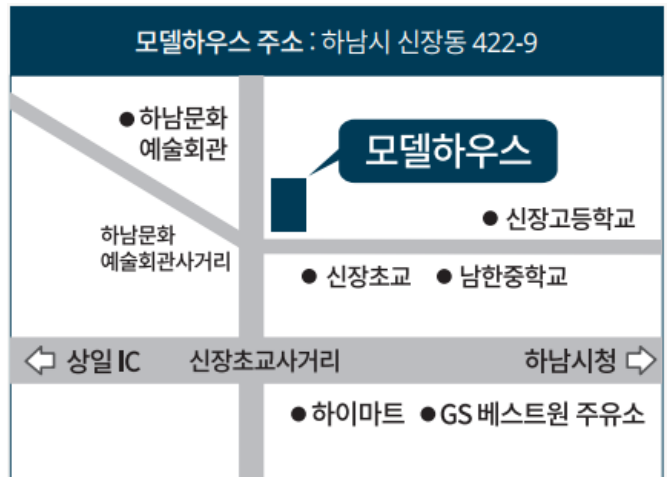
-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, 확인결과 위의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및 당첨이후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함. (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,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.)
-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,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 (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,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주택소유여부) 사항은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람.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견본주택에서 신청하여야하며, 특별공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로 선정 되지 못하며, 계약 또한 불가 함. 이 경우 배정되었던 세대는 차순위인 일반공급으로 전환됨.
- 신청한 주택형의 등·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 지정기관 (금융결제원)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.
- 타 특별공급(다자녀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)중복신청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 간 중복신청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 및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,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.
- 특별공급 신청자가 특별공급 및 1순위 중복 청약 하었을 경우 선순위인 특별공급만 인정됩니다.
- 타 사업지와 당사 중복청약은 가능하나, 당첨자 발표일이 먼저인 사업지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. 단, 당첨자 발표일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됨.
- 공급금액, 전매 제한기간, 재당첨제한기간,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람

6 광역위치도



* 상기 지도 및 CG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7. 조감도 및 견본주택 약도



▲ B6 조감도(C2,C3조감도 생략)

▲ 분양문의 1577-5811